


대구광역시 달성군 결혼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2814
----------	------

제출일자 : 2026. 3. 25.
제출자 : 달성군수 

1. 제안이유

저출산·인구감소 대응을 위해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자산형성 지원을 통한 안정적 정착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신혼부부 저축 시 예산의 범위에서 매칭 지원 근거 신설(안 제3조의2 제1항 신설)
- 나. 지원대상·지원금액·저축기간·신청절차·사후관리 및 환수 등 세부사항 준수 위임 규정 신설(안 제3조의2제2항부터 제3항까지 신설)

3. 조례안 : 따로 붙임

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붙임 참조
 - (1) 「저출산·고령사회기본법」 제10조
 - (2) 「대구광역시 달성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」 제6조
- 나. 예산조치 : 2028년도부터 연간 예산 2,400백만 원 반영 예정
- 다. 기타
 - (1) 신구조문 대비표 : 붙임 참조
 - (2) 입법예고(2026. 2. 27. ~ 3. 19.) 결과 : 의견없음
 - (3) 규제심사 :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
 - (4) 성별영향평가 : 해당사항 없음

(5) 부패영향평가 : 특기할 사항 없음

(6) 부서합의 : 해당사항 없음

(7) 비용추계서 : 붙임 참조

대구광역시 달성군 결혼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대구광역시 달성군 결혼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3조의2(신혼부부 자산형성 지원) ① 군수는 신혼부부의 경제적 자립과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신혼부부가 일정 기간 매월 일정 금액을 금융기관에 저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동일한 금액 또는 일정 비율의 금액을 매칭하여 지원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은 부부 중 1명 이상이 혼인신고일 전 1년 이상 대구광역시 달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혼인신고를 한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다.

③ 제1항에 따른 저축의 금액 및 기간 등과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금의 지원자격, 지원신청시기, 지급방식, 사후관리 및 환수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3조(결혼장려 지원사업) ① ~ ③ (생 략)</p> <p><u><신 설></u></p>	<p>제3조(결혼장려 지원사업)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제3조의2(신혼부부 자산형성 지원)</u></p> <p>① <u>군수는 신혼부부의 경제적 자립과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신혼부부가 일정 기간 매월 일정 금액을 금융기관에 저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동일한 금액 또는 일정 비율의 금액을 매칭하여 지원할 수 있다.</u></p> <p>② <u>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은 부부 중 1명 이상이 혼인신고일 전 1년 이상 대구광역시 달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혼인신고를 한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다.</u></p> <p>③ <u>제1항에 따른 저축의 금액 및 기간 등과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금의 지원자격, 지원신청시기, 지급방식, 사후관리 및 환수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.</u></p>

관 계 법 령

□ 저출산·고령사회기본법

제10조(경제적 부담의 경감)

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의 임신·출산·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

□ 대구광역시 달성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

제6조(인구정책 사업)

① 군수는 인구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[별표]에 따른 인구정책사업 외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(개정 2021.12.30.)

1. 결혼 지원 사업
2. 임신·출산·양육·주거 지원 사업
3. 다자녀가정 지원 사업
4. 일·가정 양립을 위한 가족친화 및 성평등한 사회 환경 조성 사업
5. 노인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및 여가·사회활동 참여 지원 사업
6. 인구정책 발굴을 위한 조사, 연구 및 공모에 관한 사업
7.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구정책 사업

「대구광역시 달성군 결혼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 비용추계서

1. 사업개요

결혼 초기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인구 정착 도모를 위하여 「대구광역시 달성군 결혼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」에 신혼부부 자산형성 지원 규정을 신설하고, 이를 근거로 자산형성 지원사업을 추진하고자 함

2. 재정수반 요인

혼인신고 후 6개월 이내 적금 가입 후 2년 후 만기 시 납입한 금액에 대하여 군에서 저축지원금을 1:1매칭 방식으로 지원함에 따라 지급 비용이 발생함

3. 관련조문

「대구광역시 달성군 결혼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」 개정(안) 제3조의2

4. 비용 추계결과

가. 추계의 전제

- 달성군 관내 혼인신고 건수 2024년도 1,087건, 2025년도 984건을 적용하여 비용을 추계함
- 저축지원금 : 240만 원 × 1,000쌍 = 2,400백만 원

나. 추계 결과 : 2,400백만 원 정도(연간)

- 대구광역시 달성군 결혼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」 개정안 시행에 따른 신혼부부 저축지원금은 2028년부터 연간 2,400백만 원 정도 소요되며, 5차년도까지 총 약 7,200백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

다. 재원조달방안 : 자체예산 2,400백만 원 정도(2028년부터 연간)

6. 연도별 비용추계표 : 붙임

작 성 자

소속 및 직위	홍보협력과 인구정책팀장	성명(연락처)	임민아 (053-668-8421)
---------	-----------------	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

연도별 비용추계표

(단위 : 천원)

구 분	1차년도 (2026)	2차년도 (2027)	3차년도 (2028)	4차년도 (2029)	5차년도 (2030)	계
세 입	-	-	2,400,000	2,400,000	2,400,000	7,200,000
지방세	-	-	2,400,000	2,400,000	2,400,000	7,200,000
세 출	-	-	2,400,000	2,400,000	2,400,000	7,200,000
사회보장적수혜금	-	-	2,400,000	2,400,000	2,400,000	7,200,000
재원 조달	-	-	2,400,000	2,400,000	2,400,000	7,200,000
의존 재원	소 계	-	-	-	-	-
	보조금	-	-	-	-	-
	지방교부세	-	-	-	-	-
자체 수입	소 계	-	2,400,000	2,400,000	2,400,000	7,200,000
	지방세	-	2,400,000	2,400,000	2,400,000	7,200,000
	세외수입	-	-	-	-	-
지방채	-	-	-	-	-	-
기 금	-	-	-	-	-	-
특별회계	-	-	-	-	-	-
군 비	-	-	2,400,000	2,400,000	2,400,000	7,200,000
기 타 (차입금, 민자, 예비비 등)	-	-	-	-	-	-